

고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 안 번 호	621
------------	-----

제출년월일 : 2000. 3. x/.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제정사유

- 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증진 및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 나.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등의 추진에 따른 재원을 확보함으로서 자생능력을 배양하여 여성발전을 도모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의 목적, 재원조성의 범위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기금의 용도 및 관리·운용 등에 관한사항 (안 제3조 및 제5조)
- 다.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규정 (안 제6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제 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4. 본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증진 및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고성군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성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운동 전개
 2. 여성사회참여확대 및 여성복지증진 활동을 위한 조사연구
 3. 우수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지도자 국내·외 연수 및 여성단체 국제교류
 4. 기타 여성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액 범위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등) ①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군수는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기금운용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군의회의 소관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2. 위촉직 : 여성복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서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군수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부군수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으로 한다.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고성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